

보도일시	2018. 11. 9.(금) 배포시점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1. 9.(금) 13:30	담당부서	통신서비스기반팀
담당과장	김연진(02-2110-1909)	담당자	노진홍 사무관(02-2110-1908)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18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872건(3,444,149→3,184,277건, △7.5%)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18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9,764건(724,284→314,520건, △56.6%)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 '18년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4,435→4,428건, △0.16%) 감소하였다.

붙임 : '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진홍 사무관(☎ 02-2110-19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통신자료 제공

□ 개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 '1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4,277건, 문서 수 기준으로 495,90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872건(3,444,149→3,184,277건), 문서 수 기준으로 20,698건(516,606→495,908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6.7개에서 6.4개로 0.3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07,492건(968,938→1,076,430건) 증가, 경찰은 372,657건(2,369,889→1,997,232건), 국정원은 413건(12,711→12,298건) 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5,706건(92,611→98,317건)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3,724건(93,885→97,609건) 증가, 경찰은 24,728건(392,578→367,850건), 국정원은 192건(1,400→1,208건) 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498건(28,743→29,241건) 증가

(단위 : 건)

구분		' 16년	' 17년		'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찰	전화번호수	1,135,600	968,938	965,381	1,076,430
	문서수	100,363	93,885	98,154	97,60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1.3	10.3	9.8	11
경찰	전화번호수	2,551,214	2,369,889	1,806,204	1,997,232
	문서수	406,535	392,578	346,451	367,85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6.3	6.0	5.2	5.4
국정원	전화번호수	14,484	12,711	11,156	12,298
	문서수	1,482	1,400	1,272	1,20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9.8	9.0	8.8	10.2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90,940	92,611	78,095	98,317
	문서수	26,465	28,743	27,268	29,24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4	3.2	2.9	3.4
합계	전화번호수	3,792,238	3,444,149	2,860,836	3,184,277
	문서수	534,845	516,606	473,145	495,90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7.1	6.7	6.0	6.4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940건(57,193→47,253건), 이동전화는 5,931건(426,715→420,784건), 인터넷 등은 4,827건(32,698→27,871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분	' 16년	' 17년		'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58,177	57,193	48,079	47,253
이동전화	438,616	426,715	392,613	420,784
인터넷 등	38,052	32,698	32,453	27,871
합계	534,845	516,606	473,145	495,908

II.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 '1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314,52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3,47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409,764건(724,284→314,52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123건(158,600→153,477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6개에서 2.0개로 2.6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7,914건(74,362→82,276건) 증가, 경찰은 415,051건(643,925→228,874건), 국정원은 1,903건(2,708→805), 기타기관은 724건(3,289→2,565건) 각각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918건(30,072→31,990건) 증가, 경찰은 7,020건(126,793→119,773건) 감소, 국정원은 3건(367→370건) 증가, 기타기관은 24건(1,368→1,344건) 감소

(단위 : 건)

구분		' 16년	' 17년		'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찰	전화번호수	95,158	74,362	82,978	82,276
	문서수	34,802	30,072	32,544	31,99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7	2.5	2.5	2.6
경찰	전화번호수	729,041	643,925	241,313	228,874
	문서수	121,781	126,793	108,129	119,77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6.0	5.1	2.2	1.9
국정원	전화번호수	413	2,708	690	805
	문서수	203	367	334	37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0	7.4	2.1	2.2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2,552	3,289	3,632	2,565
	문서수	1,068	1,368	1,650	1,34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4	2.4	2.2	1.9
합계	전화번호수	827,164	724,284	328,613	314,520
	문서수	157,854	158,600	142,657	153,47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5.2	4.6	2.3	2.0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115건(31,831→29,716건), 이동전화는 6,915건(106,902→99,987건) 각각 감소, 인터넷 등은 3,907건(19,867→23,774건) 증가

(단위 : 문서수)

구분	' 16년	' 17년		'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31,722	31,831	27,695	29,716
이동전화	107,241	106,902	97,622	99,987
인터넷 등	18,891	19,867	17,340	23,774
합계	157,854	158,600	142,657	153,477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 '1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28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5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4,435→4,428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8건(137→155건)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2.4개에서 28.6개로 3.8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7건(42→35건) 감소, 국정원은 동일(4,393→4,393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3건(24→21건) 감소, 국정원은 21건(113→134건) 증가

(단위 : 건)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	-	-	-
	문서수	-	-	-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	-
경 찰	전화번호수	34	42	41	35
	문서수	23	24	18	2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5	1.8	2.3	1.7
국정원	전화번호수	2,440	4,393	2,299	4,393
	문서수	113	113	64	13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1.6	38.9	35.9	32.8
*군 수사 기관 등	전화번호수	-	-	-	-
	문서수	-	-	-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	-	-
합 계	전화번호수	2,474	4,435	2,340	4,428
	문서수	136	137	82	15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8.1	32.4	28.5	28.6

* 군 수사기관 등 :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건(56→59건), 인터넷 등은 15건(81→96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유선전화	48	56	28	59
이동전화	-	-	-	-
*인터넷 등	88	81	54	96
합 계	136	137	82	155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